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15일, 김위상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0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사회)

제2차 전체회의 (2025.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5.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8차 전체회의 (2025.11.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
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위상의원)

현행법은 하천구역 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댐 등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승인 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천법이 의무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할 때 형벌은 유지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명령 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여도 행정목적은 달성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원상복구, 이행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9조, 제95조, 제9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1. 법령위반자에게 먼저 행정명령 후 벌칙 부과

개정안은 ①승인 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②일정한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③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 자 등에 대해 종전에는 바로 벌칙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상복구, 이행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9조, 제95조 및 제96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_____

· 이전 · 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 · 제14조 · 제30조 · 제33조 · 제38조 · 제43조 ·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 제50조 · 제52조 · 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 4. (생략)

<신설>

② (생략)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2. 삭제

-----.

1. 제6조 · 제14조 · 제30조 · 제33조 · 제38조 · 제39조제2항 · 제43조 -----

2. ~ 4. (현행과 같음)

② 시 · 군 · 구청장은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행위 이전의 상태로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5조(벌칙) -----

—.

<삭제>

3. ~ 5. (생 략) 6. <u>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 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u> 7. 삭 제 8. · 9. (생 략) 10. <u>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u>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7. 삭 제 8. <u>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 위를 한 자</u>	3. ~ 5. (현행과 같음) <u><삭 제></u> 8. · 9. (현행과 같음) 10. <u>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 반한 자</u> 제96조(벌칙) _____ _____ _____ —. 1. ~ 6. (현행과 같음) 8. <u>제69조제2항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u>
--	---

< 개정안 주요내용 >

대상행위	현행	개정
승인 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제14조제2항)	2년이하 징역 2천이하 벌금	(先)행정명령 (後)징역/벌금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댐 등의 관리자 등(제39조제2항)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 자 등(제75조제3항)	1년이하 징역 1천이하 벌금	(先)행정명령 (後)징역/벌금

현행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¹⁾, 현행법 제39조제2항에서는 댐, 하구둑, 운하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일정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²⁾,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1) **법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하천시설 중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2) **법 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유수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5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은 제외한다.
 2. 하구둑
 3. 하구 부근의 해수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
 4. 운하
 ②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 3) **법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6.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또한 현행법 제75조제3항은 하천관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소유자 등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이와 관련하여, 안전한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법」에서 의무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할 때 형벌조항은 현행과 같이 유지될 필요가 있어 보이나,

법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명령을 한 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여도 행정목적은 달성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⁶⁾.

이에 개정안은 승인 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일정한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 자에 대해 먼저 원상복구,

4) 법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③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축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법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6) 정부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경제 형벌 합리화 계획을 발표하고, '22년 7월 범부처 '경제형벌 규정 개선 TF'를 출범하여 경제 형벌규정의 개선(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참고자료 1. 경제형벌 규정 개선 TF 개요).

이행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형벌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제재 효과를 유지하면서 하천시설 설치자, 관리자 등의 동 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환경부는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동일하게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국민에 대한 형벌부과도 지양할 수 있으므로 하천관리청이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행정명령을 우선 처분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